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과 사실 확인 게재 요청 신설
및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28호)

2022.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시책 마련 내용 추가(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조 제2항 제9호 및 제44조제4항)	3
2. 사실 확인 게재 요청 신설 및 해당 내용 공시와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안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	9
3.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3까지 및 제76조제1항 제6호)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70인

나. 발 의 일 : 2022. 4. 27.

다. 회 부 일 : 2022.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 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의14).
-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안 제4조제2항의9).
- 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안 제44조제4항).
-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4조의2제1항).
- 마.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안 제44조의2제3항).
- 바.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6항).
- 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10).
- 아.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안 제44조의10제6항).
- 자.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안 제44조의12).
- 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안 제44조의13).
- 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1항의6).

Ⅲ. 검토의견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시책 마련 내용 추가(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조제2항의9 및 제44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항제14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방지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의9 및 제44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u>정보통신망을</u> 건전하고 <u>안전하게</u> 이용할 수 있는 <u>환경을</u>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정보통신망의</u> ----- --- <u>책임성</u> ----- <u>이용 환경을</u> ---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현행	개정안
1. ~ 1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③ (생략)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③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허위조작정보”란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항제14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의9 및 제44조제4항).
- 정보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구성요건에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구성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범자가 무엇이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의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허위조작정보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권과 같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는 불법정보¹⁾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차단 시정요구²⁾ 및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³⁾로 유통이 차단되고 있고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정보의 허위성

1)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을 이유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에 따른 처벌 또는 침익적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정의의 명확성 논란의 소지가 적고, 온라인 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및 사회 혼란 야기·혐오조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의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단순 오정보(misinformation)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 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로벌(EU 등) 추세라는 입장임. 다만, 풍자나 패러디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추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사 등⁵⁾’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4)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공보 제171호, 132 [전원재판부])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에 관하여는 당해 개정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의 자기검열 및 위축효과 방지를 위해 허위 조작정보에서 ‘언론 기사’를 제외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신설></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이 있었음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리고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일반 공개의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안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사실확인의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워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헌법 제15조6)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사실확인을 실시한 후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서는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반박내용 게재 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7)에 따라 피해

6)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7)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자가 반박내용 게재 요청 시 사업자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3까지 및 제76조제1항제6호)

가. 개정안 요지

-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대신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안 제44조의10),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6항),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44조의10부터 같은 조13까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u><신설></u>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및 반박내용의 게재 등) ④ 정보 게재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대 한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44조의10 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쟁을 독립적이고----- -----심의·조정하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촉하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되, 각 분야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언론인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온라인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현행	개정안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정하는 사람 ③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등의 여

현행	개정안
<신설>	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이해 당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고, 통보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본다.
<신설>	⑧ 그 밖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4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현행	개정안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4조의12(온라인분쟁조사관) 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건 중 의견 조정이 어려운 사안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분쟁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허위조작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정 및 소송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4조의13(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 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 등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보통신사업자가 이행했을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해 정보의 게시자 등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비밀유지 등)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u> 업무	5. -----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 ----- ----- ----- -----.
1. ~ 5의2.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제44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6의2. ~ 12. (생략)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 명예훼손분쟁조정정부 ’ 대신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며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 제44조의10),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4조의2 제4항 및 제6항),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44조의10부터 같은 조13까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6조제1 항제6호).
- 건전한 정보환경 축진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의 개인 권리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 삭제 등 ’ 요청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사업자와 정보게재자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요청권이 필요하며,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분쟁조사관 도입이 필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3~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 내용 심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우려되고, 분쟁조정의 준사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므로 민간독립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담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고, 그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표현물 내용을 심의하고 유통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한국신문협회).

문 의 처
02)6788-5230